

1-1.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전용 관련 보고

공공의료과장: 은진아 ☎ 2133-9240 시립병원운영2팀장: 오재연 ☎ 9247 담당: 성소미 ☎ 9252

□ 사업근거

- 공공보건의료법 제14조의2 5항(책임의료기관의 지정)
- 보건복지부 「2025년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」

□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서울대학교병원 (권역 책임의료기관)
- 사업기간 : '25.1.1. ~ '25.12.31.
- 사업내용 : 중증질환 진료역량 강화 위해 중환자실·심뇌혈관 장비보강 (31종 58대)
 - 중환자실 노후장비 교체: 이동형 심장초음파 포함 20종, 46대
 - 중환자실 장비 신규/추가 도입: 열희석 심박출량계 포함 8종, 9대
 - 심뇌혈관 조영 장비 노후 교체(2대) 및 조영실 확장에 따른 추가 도입(1대)
- 전용예산 : 6,400백만원

□ 예산전용 사유

-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 세부 내용이 예산 편성 후 확정됨('25.2.)에 따라 장비비 지원에 적합한 통계목으로 전환 필요
 - '25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지침 및 추진계획 확정('25.2.)이 자연되어 예산편성 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함

□ 예산전용 내역

(단위 : 천 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예산액	전용요구액		전용 후 예산액
						증	감	
공공의료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	공공의료 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	지역거점 병원 혁신지원	민간이전 (307)	민간경상 사업보조(02)	(×3,200,000) 6,400,000	-	(×3,200,000) 6,400,000	-
			민간자본 이전(402)	민간자본 사업보조 (이전재원)(02)	-	(×3,200,000) 6,400,000	-	(×3,200,000) 6,400,000

1-2.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예산전용 관련 보고

공공의료과장: 은진아 ☎ 2133-9240 공공의료정책팀장: 차동윤 ☎ 9231 담당: 남해인 ☎ 9233

□ 사업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
-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

□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서울의료원
- 사업기간 : '25.1.1. ~ '25.12.31.
- 사업내용 : 방사선종양학과 증축, 장애인편의시설 개선, 현대화장비 도입
- 전용예산 : 9백만원

□ 예산전용 사유

- 국·시비 매칭사업인 “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” 사업의 예산이
매칭비(국비) 대비 과소 편성
 - 부서 내 불용 처리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

□ 예산전용 내역

(단위 : 천 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예산액	전용요구액		전용 후 예산액
						증	감	
공공의료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	공공의료 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	제대혈 은행 운영	민간이전 (307)	민간위탁금(05)	1,019,094	-	9,000	1,010,094
		지방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	민간자본 이전(402)	민간자본 사업보조 (이전재원)(02)	(x3,487,000) 6,956,000	9,000	-	(x3,487,000) 6,965,000